

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68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형재, 강석주, 김규남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이종환, 이효진, 홍국표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K-컬처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,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.
-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, 서울특별시에 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.
- 아울러 국제문화행사 개최 시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, 치안·안전 관리, 민간 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서울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역량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국가·타 지자체·민간과의 협력 강화, 조직위원회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함(안 제3조).
- 다.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타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함(안 제4조).

- 라. 행사장 및 기반시설 제공, 도시경관 조성, 시설 신축 및 개보수, 안전 · 의료 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시민 참여 고취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활동에 대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.

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거나 서울특별시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역량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고,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·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(이하 “조직위원회”라 한다)가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국제문화행사의 지원)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·

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연장,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
2. 교통·통신·전력·용수·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·정비 및 관계기관 협조 지원
3.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
4.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·보수
5. 치안·소방·재난안전·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
6.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
제6조(민간 참여 활성화)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위임사무의 처리)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1조(목적) 제2조(정의) 제3조(시장의 책무)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	X	[재정소요 요인 없음]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 관례를 규정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2	제5조(국제문화행사의 지원) 제6조(민간 참여 활성화)	△	[기술적 추계 곤란] 서울시 관련부서(문화본부 문화정책과) 문의 결과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로 지원의 대상, 범위,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3	제7조(위임사무의 처리)	X	[재정소요 요인 없음] 위임된 사무 처리에 대한 사전 협의를 규정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「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거나 서울특별시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역량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5조(국제문화행사의 지원) 및 제6조(민간 참여 활성화)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관련 부서 문의 결과(문화본부 문화정책과) 현재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로 지원의 대상, 범위,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4. 작성자

시 의 회 사 무 처 재 정 분 석 과
재 정 분 석 과 장 이 선 희
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
추 계 분 석 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